

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2기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12.30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화장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“별표1” 화장장사용료징수기준보완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자치법규 정비
-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군민에 한함)”로 한다.

“별표1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다른조례의개정)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9 “생활보호법”을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으로 한다.
- ②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2항7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- ③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13조3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- ④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7조1항1 “생활보호법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로 한다.
- ⑤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2조1항1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- ⑥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3조3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- ⑦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5조1 “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- ⑧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제5조1및2 “생활보호대상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, 제6조1중 “생활보호대상”

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 한다.

⑨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제5조1및2중 “생활보호대상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 로 하고, 제6조중 “생활보호대상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 로한다.

⑩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호중 “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

⑪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8조1중 “생활보호법” 을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 으로 한다.

⑫고성군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중 “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

⑬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제6항제2항중 “생활보호대상 등” 을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” 으로 한다.

[별표1]

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(제3조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	비 고
		군 내	군 외	
15세 이상	1구당	45,000	135,000	
15세 미만	1구당	30,000	90,000	
개장유골	1구당	21,500	64,500	
사 산 아	1구당	16,000	48,000	
기타,적출물	1kg당	1,250	3,750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용료 감면) ①(생략) 1. <u>생활보호대상자</u>	제4조(사용료 감면) ①(현행과같음) 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u> <u>(군민에 한함)</u>

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(신.구대비표)

[현행]

(단위: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	비 고
		군 내	군 외	
15세 이상	1구당	45,000	90,000	
15세 미만	1구당	30,000	60,000	
개장유골	1구당	21,500	43,000	
사 산 아	1구당	16,000	32,000	
소 · 말	1두당	25,000	50,000	
기타,적출물	1kg당	1,250	2,500	

[개정]

(단위: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	비 고
		군 내	군 외	
15세 이상	1구당	45,000	135,000	
15세 미만	1구당	30,000	90,000	
개장유골	1구당	21,500	64,500	
사 산 아	1구당	16,000	48,000	
기타,적출물	1kg당	1,250	3,750	